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예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18

발의연월일: 2024. 7. 3.

발 의 자:김예지·강대식·김상훈

김선교 · 임종득 · 최수진

송석준 · 박덕흠 · 서천호

김용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을 구성일로부터 90일로 규정하면서, 위원장과 간사의 합의로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안건조정위원회 활동 기간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의결을 위한 최소 심의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점,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 이내라도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는 점(2019헌라5)에서 이견 조정을 위한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안건이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안건조정위원회의 의결을 위한 최소 심의 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,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심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견 조정을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활동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57

조의2제2항 및 제6항).

법률 제 호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7조의2제2항 본문 중 "90일로 한다"를 "30일 이상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정한다"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"재적 조정위원"을 "조정위원회의 구성일부터 30일 이상이 경과한 후 재적 조정위원"으로 한다.

다만, 제6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조정 위원회의 구성일부터 30일 이상이 경과하지 아니하더라도 조정안을 의결하고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안건조정위원회 활동기한에 관한 적용례)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7조의2(안건조정위원회) ①	제57조의2(안건조정위원회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	②
그 구성일부터 <u>90일로 한다</u> . <u>다</u>	<u>30일 이상 90일</u>
만,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구	이내의 범위에서 위원장이 간
성할 때 간사와 합의하여 90일	사와 합의하여 정한다. 다만,
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	제6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
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.	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조
	정위원회의 구성일부터 30일
	이상이 경과하지 아니하더라도
	조정안을 의결하고 활동을 종
	료시킬 수 있다.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	6
회부된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	
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	-조정위원회의 구성일부터 30
찬성으로 의결한다. 이 경우 조	일 이상이 경과한 후 재적 조
정위원장은 의결된 조정안을	정위원
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한다.	
⑦ ~ ⑩ (생 략)	⑦ ~ ⑩ (현행과 같음)